

발행인 : 서대문구청장

편집인 : 소통 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330-8708

서대문구보

제3043호

2026. 5. 6.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고 시】

제2026-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안)

【공 고】

제2026-728호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공고

제2026-735호 서대문구가족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제2026-739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수정)

- 구보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구정소식→공고→서대문구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보발행일은 매주 수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 2026-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안)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187-1 외 1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과(02-330-1956)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사업의 명칭: 총정로3가 187-1 외 1필지 내매입임대주택(청년형)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187-1 외 1(174)
 - 나. 구역면적: 2,559.18㎡
 - 다. 건축면적: 814.35㎡
 - 라. 연 면 적: 9,371.13㎡

마. 규 모: 지하1층, 지상15층

바. 용 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167세대)

4. 사업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28. 2. 5.(예정)

5.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충정로3가 18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7-1번지 외 1필지	-	증) 2,559.18	2,559.18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7-1번지 외 1필지	2,559.18	◦ 내매입임대주택아파트(청년형) 신축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①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559.18	-	2,559.18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59.18	-	2,559.18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획지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획지	2,559.18	충정로3가 187-1번지 일원	2,559.18	◦ 내매입임대주택아파트(청년형) 신축사업을 위한 획지 계획

②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복리 시설	-
(a)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 건축물 밀도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준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 운영기준 및 메뉴얼」 준용
	허용용적률	◦ 215%	
	상한	◦ 30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최고높이	◦ 최고높이 48m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적용량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5%p
합계			5%p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비고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용적률의 20퍼센트	50%	250% x 20% = 50%
친환경 항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11% + 3% = 14% - 인센티브 완화량 : 250% x 14% = 35%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 완화비율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 완화비율	
	ZEB 5등급	11%	

3) 건축물의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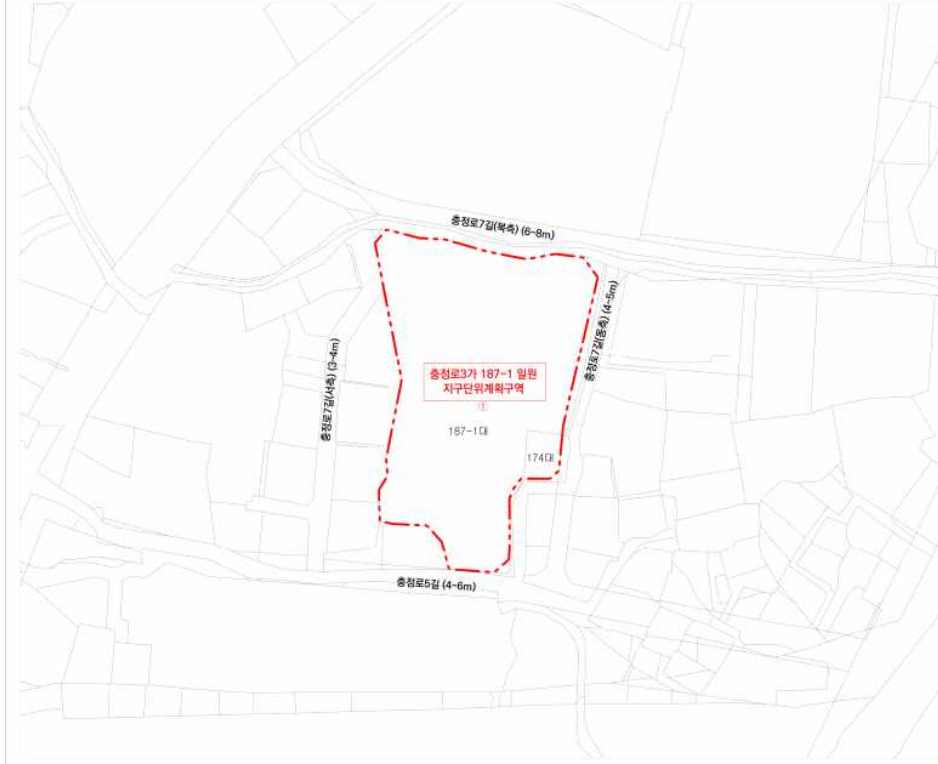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 대상지 북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총정로7길(북측)(6~8m)
	◦ 대상지 남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총정로5길(남측)(4~6m)
	◦ 대상지 동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이격	총정로7길(동측)(4~5m)
	◦ 대상지 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	총정로7길(서측)(3~4m)

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대지 내 공지계획 결정조서

1) 전면공지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면 공지	이면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m~2m



충청로3가 18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SCALE = NONE

0 10 20 40m



충청로3가 18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SCALE = NONE

0 10 20 40m

충정로3가 18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획지
- 획지선

SCALE = NONE



충정로3가 18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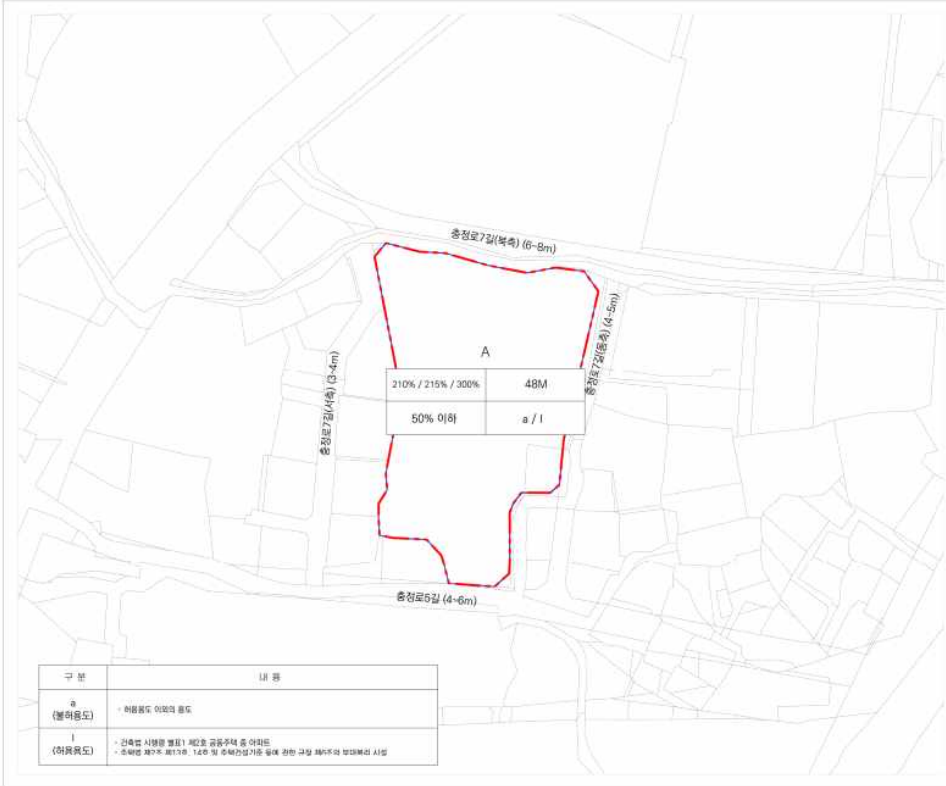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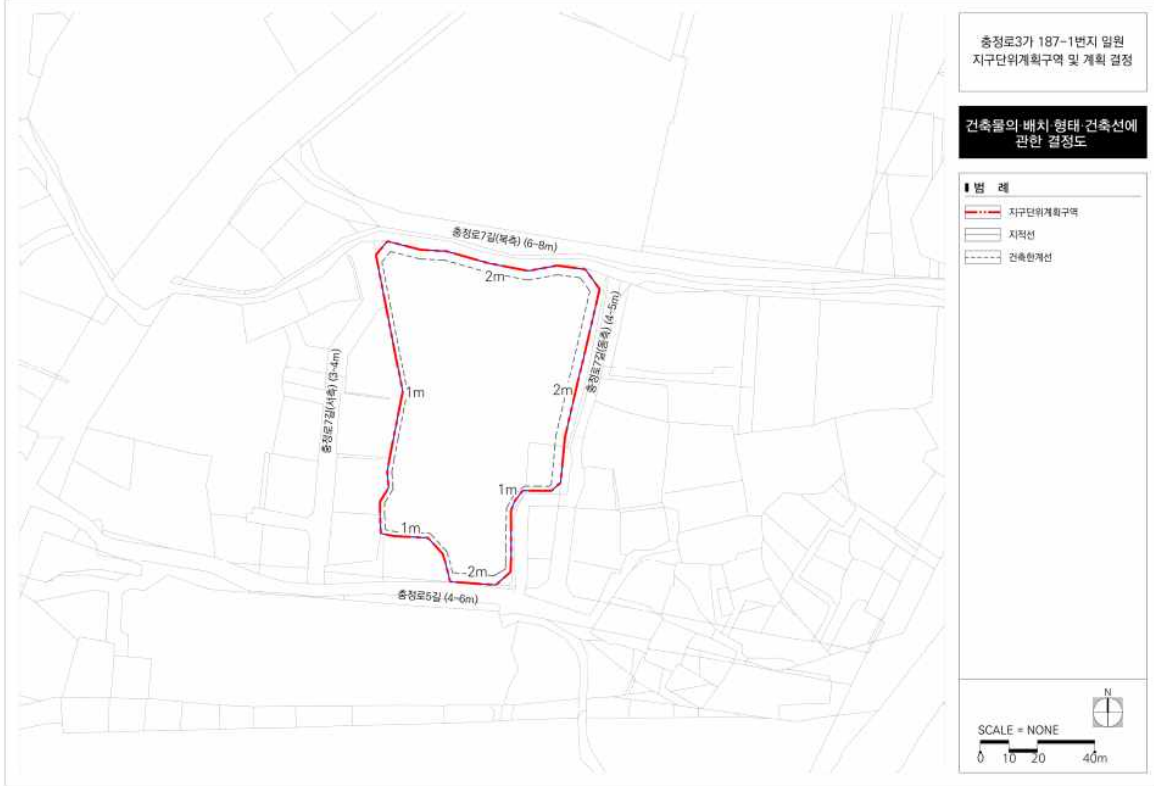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용적률	높이
건폐율	별하 / 허용용도

SCALE = NONE



구분	내용
a (별하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l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공공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별표1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방화벽의 시설



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2026. 4. 20.

공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 - 728호

분뇨수집 · 운반 대행계약 체결 공고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 · 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체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서 대 문 구 청 장

대행기간 : 2026. 6. 1. ~ 2028. 5. 31. (2년)

대행업무 : 대행구역 분뇨수집 · 운반

대행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행구역
(주)신성정화	양인식	서대문구 모래내로 346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2·3동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330-1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735호

서대문구가족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서대문구가족센터의 위탁운영체(재위탁)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5.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위탁시설

가. 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	주요시설
1센터	서대문구가족센터	증가로 244	487.47㎡	25	지층 : 언어발달지원교육실 1층 : 다목적실 / 1인가구지원센터 2층 : 사무실, 교육실, 교류소통공간 3층 : 상담실, 교육실
2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통일로 27길 19 (홍제1동 자치회관 2층)	63㎡	6	사무실(맞벌이가정 및 부모역할지원) 공동육아나눔터(미취학아동 중점)
3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연희로32길 48 (연희성원A 관리동 2층)	87.9㎡	1	공동육아나눔터(초등돌봄 중점)

- 나. 종 사 자 : 32명 ※ 종사자 수는 사업에 따라서 변동
- 다. 시설예산 : 2,085,456천원 (2026년 예산 기준)

2. 위탁기간 : 2026. 9. 1. ~ 2031. 8. 31.(5년)

3. 위탁사무

- 가. 서대문구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나. 서대문구가족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일체
- 다. 기타 서대문구가족센터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가. 신청자격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단, 법인정관의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함.
- 나. 신청제외대상 :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의 부족 및 안전관리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최소 충족 기준 >

○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상실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단체)
-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 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단체)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

- 가. 공고기간 : 2026. 5. 4.(월) ~ 6. 15.(월) ※ 1개 법인(단체) 또는 미신청 시 재공고
- 나.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5.(월) 17: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다. 제출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라.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제3별관 가족정책과 출산다문화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제3별관 3층)

6. 제출서류

- 가. 수탁신청서 <소정양식>
- 나. 법인(단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회칙(규약)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다. 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단체)의 경우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라. 법인(단체) 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증빙서류 포함)
- 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소정양식>

[법인(단체) 현황, 법인(단체) 사업 수행실적, 법인(단체)의 재무확보 수준 및 안정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등]

바. 최근 3년간 법인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감사, 감독청 평가결과(지도·감독 결과)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사. 향후 5년간 서대문구가족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아. 서약서,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자.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등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 서류는 1권으로 편철(양면인쇄, 쪽번호 명시, 목차 작성, 항목 별 구분 견출지 부착) A4 규격으로 총 11부 제출(직인 날인 된 원본 1부, 사본 10부)

※ 심사자료 제출 시 제안서(요약서)를 A4 용지에 요약하여 총 11부 제출

※ 발표자료(PPT 출력물 등) 총 11부 제출

※ 모든 서류 일체(심사서류 및 요약본) 및 발표자료(PPT 등) 파일은 USB 또는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전자메일 주소: shyeon2210@sdm.go.kr)

7.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6년 6월 예정(일정,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서대문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PPT 등)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이며, 제안 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 발표는 법인(단체)대표 발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다. 심사기준: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

- 평가항목: 3개 대항목, 12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가산점 5점 별도)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단체)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점
	2. 법인(단체)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	15점
	3. 법인(단체)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점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점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점
	2. 법인(단체)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점
	3. 법인(단체)의 회계투명성	10점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점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점
	3. 조직운영 계획	10점
	4. 인사관리 계획	10점
	5. 안전관리 계획	총족/미총족
계	전체 합계	100점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점

- 평가지표 :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 평가지표

라. 최종선정

-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 득점자 선정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 최고 득점자라도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 그 법인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마. 선정결과 공개 : 개별통지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바. 향후일정

- 선정 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 무응찰 및 단독입찰 시 재공고,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

8. 위탁조건

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나.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 중인 전문 인력 및 시설종사자(시설장 제외)에 대하여 고용 승계 및 유지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준수하여야 함
- 다.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라.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의무 및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 마. 수탁법인은 서대문구가족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이 불가함
- 바. 센터를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일부는 수탁법인 전입금으로 충당
- 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 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 로 별도 약정 체결함

9. 기타사항

-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다. 관련사항(법령포함)의 확인, 작성 내용 및 관련서류(증빙서류 포함)의 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330-1426)로 문의 바람

공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6-739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수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4호(2025.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에 대해 공람을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또는 그 밖의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5. 6. ~ 2026. 5. 20.
2.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330-1654)
3. 공람내용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78,923.0㎡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고영대)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87(북가좌동) 삼진빌딩 4층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마. 구역지정일 : 2012년 6월 7일
 - 바. 사업시행인가 내용
 - 지하4/지상40층 13개동 1,430세대(임대199세대 포함), 연면적266,285.597㎡

4. 관계서류(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의견제출처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330-1654)

6. 수정사항 : 「토지보상법」 제21조 조항 기입

※ 사업시행계획 및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끝.